

이혼 여성의 주거 실태에 관한 연구  
Divorced Women's Housing Conditions in Korea

김 만재 강릉대학교 지역개발학과 부교수

주요단어: 이혼여성, 주거 만족도, 주거복지, 주거실태, 해체론적 접근

목 차

- I. 서론
- II. 이혼과 주거 문제
  - 1. 이혼 현황
  - 2. 이혼에 따른 주거 문제
  - 3. 이혼 여성의 주거 문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
- III. 이혼 여성의 주거 실태
  - 1. 자료 및 분석 방법
  - 2. 이혼 여성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 3. 이혼 여성의 주거 특성
  - 4. 이혼 여성의 주택 및 주거지역에 대한 만족도
- IV. 결론: 이혼 여성을 위한 주거 복지 제안

## I. 서론

산업화, 도시화, 개인주의화가 진행되면 이혼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이혼율 증가는 경제발전 및 여성의 권익 신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95년 이후 7년 동안 조이혼율(인구 천명당 이혼건수)이 1.5에서 3.0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자,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가족 해체 내지 가족 위기로까지 간주하게 되었다(은기수, 2002).

이혼여성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지만 여성들이 취업하기 용이한 서비스업이 주로 주택가격이 비싼 대도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혼여성들의 주거 문제는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법의 개정으로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에서 여성들이 감수해야 했던 불평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노명숙, 김순옥, 2000), 이혼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이혼 여성들의 주거문제는 자녀 양육 문제와 결부되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일찍부터 높은 이혼율을 경험하였던 서구에서는 주택 연구에서도 모자가정의 주거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Symon, 1990; Bull, 1993). 특히 여성학이 독자적 학문으로 발전하면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주택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양성 평등적 주택 디자인, 여성 홈리스의 특성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Gilroy and Woods, 1994; Austerberry and Watson, 1983; Watson, 1990; Weisman, 1994; Moser, 1985). 여성의 주거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가부장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환경결정론, 부가적 접근, 해체론적 접근 등 여성학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적 주택 정책을 제안하려는 시도 또한 등장하였다(Chan, 1997). 이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이혼 여성들의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극히 드물어, 가장 기초적인 주거현황조차도 분석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01년 사회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이혼여성들의 주거 실태 및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혼 현황을 살펴보고, 이혼시 발생하는 주거문제를 고찰한 후, 여성학적 측면에서의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한국 이혼여성들의 주거현황을 유배우 여성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이혼여성들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혼과 주거 문제

## 1. 이혼 현황

최근 통계청(2003)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한해 동안 14만 5천쌍의 부부가 이혼하여 인구 천명당 이혼율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991년의 이혼율이 1.1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난 십여년 동안 거의 3배에 가까운 비율로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해마다 0.1씩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던 이혼율은 IMF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전혀 감소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91년에서 2002년 동안 나타난 특징으로는 전체 이혼부부 중에서 동거기간 5년 미만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37.6%에서 26.9%로 줄어든 반면,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비율은 5.8%에서 15.7%로 급격하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이혼 사유에 있어서는 2002년의 경우 성격차이가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간 불화 14.4%, 경제문제 13.6%, 배우자 부정 8.6%, 정신적, 육체적 학대 4.8%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3).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이었지만(강은희, 1995: 35-40; 김정옥, 1993: 45-51), 최근에는 그 비중이 상당히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전체 이혼건수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1990년 가족법 개정 이전에는 자식은 아버지의 핏줄을 잇는다고 생각하여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친권만을 인정하였으나, 개정가족법에서는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여성들의 자녀 양육이 증가하고 있다(노명숙, 김순옥, 2000: 96-109).

## 2. 이혼에 따른 주거문제

여성의 주거문제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영국에서는 주택의 점유 형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이혼 당시 부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처분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는 자녀들을 위한 영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 보유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배우자 쪽은 주택 자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몫을 배당 받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McCarthy and Simpson, 1990: 173). 또한 양육권을 가진 여성들은 이혼 당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 전

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Holmans, 1990: 66). 뿐만 아니라 모기지 지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기지 지불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Austerberry and Watson, 1981: 53).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이혼 여성들이 자가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된다.

영국에서는 과거에 비해 재산분할시 자녀의 주거권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만약 주택을 처분한 후 아내의 몫이 적절한 주택을 구매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린 자녀가 17세가 되었을 때 주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양분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었다(Brion and Tinker, 1980: 14). 또한 양 쪽의 욕구를 고려하여 아내에게 주택권리를 완전히 양도하는 대신 자녀 양육비를 삭감하는 절충안이 제시된 적도 있었다. 주택이 남편과 아내의 공동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이혼시 여성이 살던 집에 거주할 확률이 더 높지만, 남편의 단독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이 재산 분할을 결정할 때까지 현 주거지에 머무를 수 있으며, 합의가 되기 전에 남편은 주택을 매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정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여성은 현 거주지에서 쫓겨날 수 없도록 보호를 받고 있다(Brion and Tinker, 1980: 14).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개인임대주택 보다 주택의 질이나 임대료에서 유리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부부가 공공 임대자로 되어 있다면 여성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남편이 떠나면서 임대료가 지체되어 있다면 여성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Brion and Tinker, 1980: 15-16). 공공임대 주택에서 누가 임대권을 유지하는가의 문제는 자가소유와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실정이다.

홈리스에 대한 두려움은 양육권의 유무와 관련없이 이혼한 사람들이 모두 직면한 문제이다. 1986년 지방정부에 의해 홈리스로 인정된 112만 가구 중에서 20% 이상이 배우자와의 관계 붕괴 때문에 홈리스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O'Callaghan and Dominian, 1996: 34-38). 게다가 홈리스가 된 주요 원인이 부모, 친척, 친구 등이 더 이상 주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는데, 이혼 소송 시작 단계에서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홈리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결론적으로 영국에서 이혼 여성들은 자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공공임대정책의 축소로 기존의 임대자가 아니면 새로 선정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개인임대주택을 옮겨다닐 수밖에 없게 되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홈리스로 전락하게 된다.

### 3. 이혼여성의 주거 문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

## 1) 지배적 주거 이데올로기

주택의 위치 및 디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배적 관점으로는 이상적 가정관(domestic ideal)과 가족 이데올로기(familial ideology)를 들 수 있다(Chan, 1997: 8-9). 데이비도프(Davidoff) 등이 주장한 이상적 가정관에서는 범죄율이 높은 도심에서 벗어나 교외에 거주하는 것을 최상의 주거 입지로 간주한다. 가정이란 조용하고 깨끗하여야 하며, 직장과 떨어져 있어 가장이 퇴근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은 서구 중산층의 남성주의적 백인 문화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교외에 거주할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인종적 소수 집단, 노동자 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외에 거주하는 여성들 또한 이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부들의 노동시장 및 사회 활동 참여 욕구는 통제되기 마련이다.

이상적 가정관이 백인 남성 계층의 이상적 주거 입지 및 주거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라면, 가족 이데올로기는 주택을 통해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상이 존속되고 강화되는 측면을 강조한다. 즉 가족 이데올로기에서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고, 가족 구성원들은 가정 내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핵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Chan, 1997: 9-11). 즉 아버지는 부양의 의무를 지니고 있고, 어머니는 자녀와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가정에 머무르며,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젠더에 따른 역할 분담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가족 이데올로기는 또한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고, 가족 성원들간의 갈등이나 불평등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설혹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이상적 가정관과 가족 이데올로기는 비록 관심의 초점은 다르지만, 전통적 가부장적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기존의 주택 정책 중에는 이러한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주택 정책에서도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산층 위주의 교외화가 확산되고 있고 대부분의 주택 건설이 핵가족 위주라는 점은 가부장적 주거 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핵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교외에 핵가족으로 구성된 가족을 위주로 한 주택정책만을 강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상적 가정관과 가족 이데올로기의 팽배는 이혼 여성의 주거 문제가 자연스럽게 주택정책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2) 여성학적 주거 관점

주거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은 젠더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시피 한 지배적 주거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기에서 출발하였다. 왓슨(Watson, 1988)의 분류와 이를 홍콩의 사례 연구에 응용한 찬(1997)의 연구에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주택 문제의 제기를 다음과 같이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 부가적 접근(the 'add on' approach), 해체론적 접근(the deconstruction approach)으로 분류하였다.

환경결정론에서는 주택과 주거 환경은 여성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의 주택과 도시 디자인은 가정에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환경결정론자들은 주택 디자인과 도시 구조를 변경시킴으로서, 양성 평등적인 주거 환경을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가적 접근의 가장 큰 관심은 주택 체계에서 여성의 열악한 지위와 여성에게 분배된 주택 자원의 부족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주택 욕구를 지닌 집단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특별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여성에게 주택 자원을 더 배분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체론적 접근은 주택 정책에 담겨있는 이데올로기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면서, 여성의 열등한 지위는 주택 체계 자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젠더 개념이 없는 다른 사회 체계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양성 평등적 주택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사회적 사회관계 속에 미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불평등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조명하여 주택 자원의 부당한 배분을 폭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손더스(Saunders, 1990)는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은 가정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정은 여성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해체론적 접근에서 볼 때, 이러한 손더스의 주장은 여성들이 현존하는 실제로부터 이득을 얻는다고 착각할 정도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결과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일상생활에서 젠더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현상은, 푸코의 권력에 대한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푸코(1990)는 권력이란 단순히 억압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하고, 건설되며, 재생산되는 것으로서,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모세관처럼 밑에서부터 만들어져 전체 사회관계를 통해 퍼져 나간다고 역설한 바가 있다. 해체론적 접근에서는 푸코의 권력 개념과 유사하게 현존하는 주택 체계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강화되었는가를 밝힘으로써 지배적 젠더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III. 이혼여성의 주거 실태

#### 1. 자료 및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한국 이혼 여성들의 주거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원자료)와 2001년 사회통계조사(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여성 인구를 혼인상태별에 따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혼 및 유배우 여성 집단만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 가구주를 분석 단위로 하면 대부분의 유배우 여성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가구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우선 두 집단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령, 학력, 종교, 경제활동상태, 구직여부, 종사상의 지위, 컴퓨터 활용상태, 인터넷 활용상태, 개인 휴대용 통신기기 등 총 9개의 변수를 선정하여 유배우 여성과 이혼 여성 간에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 중에서 종교는 2000년 조사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종교에 따른 차이점 분석은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2% 표본(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이혼 여성의 주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1년전 거주지, 대표가구 여부, 주택점유, 주택 형태, 부엌 시설, 화장실 시설, 목욕 시설, 상수도 시설 등 총 10개의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현 실태만을 조사한 인구주택 총조사와는 달리, 2001년에 행한 사회통계조사에서는 주거 지역 및 주택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하는 주택 형태, 원하는 입주 형태, 수리 필요의 시급성,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택 불만족 이유, 거주지역 만족도, 거주지역 불만족 이유, 현거주지 선택 이유 등 총 9개의 변수를 선정하여 유배우 여성과 이혼 여성간의 선호도 및 만족도에서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단 사회통계조사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분석 단위는 여성 가구주로 한정되었다.

유배우 여성 집단과 이혼 여성 집단을 비교하기 위한 구체적 통계적 방법은 SAS를 이용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사용하였다.

#### 2. 이혼여성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유배우 여성과 이혼여성의 주거 특성을 비교하기에 앞서, 이 두 집단의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우선 두 집단의 연령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평균연령은 유배우 여성은 44.55세, 이혼 여성은 44.83세로서 상당히 비슷한 편이었다.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유배

우 여성이 이혼 여성보다 높은 편이었고, 종교에 있어서는 유배우 여성이 이혼 여성보다 기독교와 가톨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여성이 겪는 가장 큰 현실적 문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들 수 있기 때문에(김영란, 1998), 유배우 여성과 이혼 여성의 가장 큰 차이는 경제활동 및 고용형태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통계상으로는 잠시 쉬고 있는 비율의 차이 때문에 두 집단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유배우 여성과 이혼 여성의 현재 취업 비율은 각기 60.72%와 60.96%로서 상당히 비슷한 편이었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구직여부를 질문한 결과, 찾아보았다는 응답이 이혼 여성은 40.00%로서 유배우 여성의 16.30%보다 월등하게 높아 이혼 여성이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임금·봉급 근로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이혼 여성은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유배우 여성은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편이었다.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정보화기기 관련 질문이 추가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상태에 있어서는 유배우 여성이 이혼 여성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컴퓨터 사용도가 경제적 지위 및 학력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동전화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이혼 여성의 보유 비율이 유배우 여성보다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이혼 여성의 높은 이동성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이혼여성의 주거 특성

<표 3-2>에 의하면, 기혼여성과 이혼 여성은 거주 및 주택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거주지에 있어서, 이혼 여성은 기혼 여성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여성들이 취업하기 쉬운 서비스 직종이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현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을 살펴 보면, 2년 미만과 15년-25년 사이의 범주에서는 이혼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1년전 거주지를 분석하였을 때, 이혼 여성들이 같은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기혼 여성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져, 이는 이혼 여성의 주거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구의 형태에 있어서도 유배우 여성과 이혼 여성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나, 이혼 여성은 주인가구의 비율이 낮은 반면 대표가구 및 동거가구의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사용한 주택 관련 변수 중에서 주택점유, 주

<표 3-1> 이혼여성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유배우여성	이혼여성	Chi-square 값
연령			1774.485***
29세 이하	9.17	3.54	
30-39세	31.25	25.72	
40-49세	28.25	43.37	
50세 이상	31.33	27.38	
학력			1693.807***
초등학교 이하	18.94	22.30	
중학교	14.46	22.86	
고등학교	40.85	42.34	
대학 이상	25.76	12.49	
종교 (1995년)			32.034***
무교	40.04	41.75	
불교	29.68	31.23	
기독교	20.99	19.05	
가톨릭	7.77	6.08	
기타	1.52	1.88	
경제활동상태			209.304***
있음	60.72	60.96	
잠시 쉬고 있음	0.43	1.25	
없음	38.85	37.79	
구직여부			2055.559***
찾아보지 않았음	83.70	60.00	
찾아보았음	16.30	40.00	
종사상 지위			933.488***
임금, 봉급 근로자	55.53	67.24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5.06	24.53	
고용원을 둔 사업주	8.26	6.48	
무급 가족 종사자	11.14	1.75	
컴퓨터 활용상태			2293.916***
매일(주5일이상) 사용	20.93	8.71	
1주일에 1번 이상 사용	12.30	6.60	
1달에 1번 이상 사용	3.65	2.30	
2-3달에 1번 이상 사용	1.53	1.11	
사용하지 않음	61.60	81.27	
인터넷 활용상태			1873.387***
매일(주5일이상) 사용	16.24	6.24	
1주일에 1번 이상 사용	10.44	4.95	
1달에 1번 이상 사용	2.72	1.71	
2-3달에 1번 이상 사용	1.15	0.85	
사용하지 않음	69.45	86.25	
개인 휴대용 통신기기			174.788***
이동전화기(휴대폰 또는 차량전화)	56.16	61.41	
무선호출기(삐삐)	0.12	0.23	
이동전화기 및 무선호출기 모두	0.54	0.60	
없음	43.18	37.76	

\*\*\* p<.001

택형태, 부엌설비, 화장실설비, 목욕탕설비,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총 6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들 변수들이 모두 유배우 여성과 이혼 여성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점유 형태는 한국처럼 주기적으로 주택가격의 폭등을 경험한 나라에서는 주택계급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이혼 여성은 유배우 여성보다 자가 비율이 14%나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계급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택형태에 있어서는 이혼 여성은 유배우 여성에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 여성들은 아파트 비율이 높은 대도시에 거주하고,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혼 여성들의 주거욕구는 억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부엌, 화장실, 목욕실 설비에 따른 주택의 질을 분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혼 여성은 유배우 여성에 비해 질이 낮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가지 시설에서 현대적 설비의 구비 여부에 관한 비율을 보면, 부엌 입식의 경우에는 유배우 여성과 이혼 여성의 비율이 각각 94.86%와 91.99%로서 유배우 여성이 좀 더 현대식의 부엌설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장실 설비에서는 유배우 여성이 수세식 설비를 구비하고 사는 비율이 이혼 여성보다 약 2%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목욕탕의 온수 설비에서는 약 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이혼 여성이 유배우 여성보다 3%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이혼 여성의 대도시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4. 이혼 여성의 주택 및 주거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 3-3>에서는 2001년 사회통계조사를 사용하여 주택 및 주거지역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원하는 주택 형태, 원하는 입주 형태, 주택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거주 지역 만족도, 현거주지 선택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유배우 여성 가구주와 이혼 여성 가구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나머지 3 변수, 즉 현주택의 수리 필요 여부, 수리 필요의 시급성, 거주지역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원하는 주택 형태에 대해서는 유배우 여성 가구주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반면, 이혼 여성 가구주는 아파트를 선호하였다. 선호하는 주택 입주 형태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자가 소유를 선호하였다. 하지만 이혼 여성 가구주는 유배우 여성 가구주보다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타인지 자가 선호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주택

<표 3-2> 이혼여성의 주거 특성

	유배우여성	이혼여성	Chi-square 값
거주지역			398.113***
대도시(광역시이상)	46.86	54.38	
도시	40.49	37.23	
농촌	12.65	8.40	
거주기간(현거주지)			141.790***
1년 미만	17.41	19.79	
1년-2년 미만	15.28	16.90	
2년-3년 미만	8.77	8.33	
3년-5년 미만	11.00	9.84	
5년-10년 미만	22.76	22.66	
10년-15년 미만	8.00	7.46	
15년-20년 미만	3.32	3.35	
20년-25년 미만	2.78	2.92	
25년 이상	10.68	8.74	
1년전 거주지			1005.862***
현재 살고 있는 집	81.09	70.58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11.59	19.09	
다른 시,군,구 내 다른 집	7.20	10.15	
북한 또는 외국	0.12	0.18	
대표가구 여부			1539.597***
주인가구	56.99	42.66	
대표가구	23.00	24.91	
기타 세 들어 살고 있는 동거가구	20.01	32.43	
주택점유			2145.994***
자기집	56.85	42.45	
전세	26.53	28.08	
보증금 있는 월세	9.62	19.40	
보증금 없는 월세	2.09	4.04	
사글세	1.62	2.56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3.28	3.47	
주택 형태			1008.368***
단독주택	46.31	56.84	
아파트	39.77	27.02	
연립주택	5.98	6.33	
다세대주택	3.29	4.12	
영업용 건물 내 주택	4.19	4.85	
오피스텔	0.06	0.18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0.03	0.13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0.03	0.04	
기타(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막사 등)	0.33	0.48	
부엌 시설			235.323***
입식	94.86	91.99	
재래식	4.86	7.43	
없음	0.28	0.57	
화장실 시설			69.456***
수세식	87.55	85.47	
재래식	12.28	14.20	
없음	0.17	0.33	
목욕 시설			442.781***
온수시설	88.74	83.14	
비온수시설	1.37	1.63	
없음	9.89	15.23	
상수도 시설			132.922***
설치되어 있음	87.31	90.58	
설치되어 없음	12.69	9.42	

\*\*\* p<.001

및 거주 지역 만족도에서는 유배우 여성 가구주가 이혼 여성 가구주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주택의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주택 규모 및 주택의 노후를 불만족의 주된 이유로 언급하였다. 또한 현거주지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이혼여성 가구주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현거주지를 선택한 비율이 유배우 여성 가구주 보다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혼 여성 가구주는 유배우 여성 가구주에 비해 주택 및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낮으며,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현거주지에 산다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이혼여성을 위한 주거 복지 제안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이혼 여성들의 주거 현황은 유배우 여성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과거에 비해 활발해지긴 하였으나 이혼 여성들 중 상당수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직장을 가져야 하는 형편이다.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이혼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유리하지만 높은 주택 가격 및 임대료로 인하여 생활고가 가중될 수도 있다. 또한 자가 소유자가 아닌 이혼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하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자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의 질에 있어서도 이혼 여성들은 유배우 여성들에 비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 및 주거지역에 대한 불만 또한 높은 편이다.

이혼당사자를 상대로 인터뷰한 사례 연구(오선순, 2000)를 보더라도, 이혼 후 여성들이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 부문 주택 문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이혼 여성은 자녀가 없지만 이혼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바람에 거처할 집이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부모가 걱정할까봐 친정에서 살지 못하고 친구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 방을 얻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토로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이혼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2). 모자보호시설은 18세 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 모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가 대상인데, 생계비 및 의료급여, 학비·아동급식비·보육료 지원, 세대당 1,200만원 한도의 복지 자금 용자 지원, 시설에서 2년 이상 기거 후 퇴소시 자립정착금 세대당 200만원 지원, 영구임대주택

<표 3-3> 이혼 여성가구주의 주거 지역 및 주택 만족도

	유배우여성	이혼여성	Chi-square 값
원하는 주택 형태			53.522***
단독주택	59.0	42.9	
아파트	37.1	52.5	
기타	3.9	4.6	
원하는 입주 형태			28.696***
소유주택	91.6	84.4	
임대주택	8.4	15.6	
현주택의 수리 필요 여부			0.923
없다	36.2	33.3	
있다	63.8	66.7	
수리 필요의 시급성			2.384
당장 수리 필요	26.3	28.2	
당장은 아니지만 1-2년 안에 수리 필요	43.9	38.1	
안전에 문제 없다	29.8	33.7	
주택에 대한 만족도			21.927***
매우 만족	7.1	3.3	
약간 만족	16.6	12.7	
보통	39.3	41.3	
약간 불만	27.1	30.2	
매우 불만	9.8	12.4	
주택의 불만족 이유			26.696***
주택 규모 작아서	28.3	26.3	
주택 넓어서	30.2	28.8	
난방시설 미흡	11.2	8.2	
화장실 불편	7.5	15.7	
상,하수도 시설 미흡	4.3	2.5	
일조, 통풍이 안돼서	7.1	8.9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6.1	3.2	
입차료 비싸서	2.9	5.0	
기타	2.5	1.4	
거주지역 만족도			14.078**
매우 만족	10.0	5.9	
약간 만족	19.9	18.4	
보통	42.7	48.7	
약간 불만	22.5	21.9	
매우 불만	5.1	5.2	
거주지역 불만족 이유			10.645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서	14.2	16.9	
교통 사정 불편	23.4	22.5	
편의시설 멀어서	18.2	14.6	
주차시설 부족	12.5	11.8	
공해 때문	18.0	21.3	
교육여건 좋지 않아서	6.0	3.9	
비싼 물가	3.2	1.1	
범죄 자주 발생	1.7	4.5	
기타	2.8	3.4	
현거주지 선택 이유(1순위)			101.907***
사업상 또는 직장 이유	17.5	17.9	
자녀교육, 본인 학업	8.0	4.2	
자녀육아 및 양육	3.0	2.3	
교통 또는 근린시설 이용 편리	11.0	10.5	
옛날부터 살아와서	17.9	6.8	
자연환경이 좋아서	4.6	1.8	
경제적 사정	36.0	53.7	
기타	2.0	2.7	

\*\*p<.01, \*\*\* p<.001

입주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자보호시설은 2001년 현재 전국에 39개가 있으며 총 931세대가 수용되어 있다. 모자자립시설은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 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정이나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생계비 및 의료급여, 자립정착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자보호시설과는 구별되며, 2001년 현재 총 3곳의 시설에서 51세대가 수용되어 있다. 반면 모자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로부터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또는 모를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보호하게 되는데, 총 시설수는 12개이고 2001년 말 현재 149명의 모와 112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다.

2001년 한 해만 하더라도 14만 5천여명의 여성들이 이혼한다는 실정을 고려할 때 (통계청, 2003), 단지 천여 세대 정도만이 모자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현실은 한국의 주거복지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들은 보유자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퇴소시 총 1,400 만원 정도의 용자 및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도시의 전세 수준을 고려할 때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전세값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모자원에 기거하는 동안은 숙식과 자녀 양육에 관한 상당 부분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동안 돈을 모아 집 값을 장만하여야 하며, 모자원을 퇴소한 후에는 자녀양육비와 생활비의 지출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오선순, 2000: 58).

이처럼 이혼여성들은 양적, 질적으로 심각한 주거문제에 봉착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도 상당히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가적 접근의 관점에서, 이혼여성들은 특별한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더 향상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혼여성들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으로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주택 정책을 살펴보면, 이런 제안은 현실 정에서는 비현실적인 측면이 강하다. 대한주택공사(2002)의 자료를 보면, 2002년까지 건설될 총 518,819호의 임대주택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5년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의 공공 임대주택에 속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장기 임대주택은 1980년대에 건설된 5천호가 전부이고,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이후 건설된 실적이 없으며, 국민임대주택 또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청약저축을 가입할 형편조차 되지 못하는 최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 다른 부가적 관점으로는 앞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혼여성들의 은행 대출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현재 복지자금 대출은 저소득모자가정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실행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인가구는 84만원 이하, 3인가구는 111만원 이하, 4인가구는 130만원 이하이어야 하지만, 무보증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3만원 이상의 납부실적 및 연 1,000만원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03), 실질적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중에서 무보증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보증하여 여성 가구주들이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결정론적 접근으로서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혼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부서의 2003년 예산 가운데 보육사업 비율이 대부분이 9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대한매일 2003년 9월 30일). 물론 이는 이혼 여성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양육을 더 이상 가정에만 의존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이지만,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을 통해 이혼 여성들도 좀 더 편리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권리가 많이 신장되었다고는 하지만, 혼인 당시의 주택 소유권은 주로 남성에게 속해 있다. 또한 이혼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재산 분할에서도 주택 소유권을 지닌 남성위주로 주택 처분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여성들은 경제적 문제 못지않게 주거 문제를 겪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혼여성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주거는커녕 일시적인 정착지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보건복지부, 2002). 그러므로 이혼여성들에 대한 주거복지의 제공은 궁극적으로 헤체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불평등을 타파하고, 주택정책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구축하여야 이혼 여성들은 평등하게 주거복지를 배분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은희, 1995. 이혼, 그 새로운 만남. 서울: 아침.
- 김영란, 1998. “빈곤의 사회화, 사회복지, 세계화”. 여성과 사회 제9권 제1호: pp64-79.
- 김정옥, 1993. “이혼원인의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

울: 하우.

- 노명숙, 김순옥, 2000. "1990년 개정가족법 이후의 판례에 나타난 이혼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5권 제1호: pp93-112.
- 대한매일. 2003. "지자체 여성정책 예산 턱없이 부족". 9월 30일.
- 대한주택공사. 2002. 주택핸드북 2002.
- 보건복지부. 2002. 2002년도 모자복지 시설 현황.  
\_\_\_\_\_ 2003.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오선순. 2000. "이혼가족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은기수, 2002. "계속되는 가족의 위기". 국민일보 10월 17일.
- 통계청. 2003. 인구동태조사.
- 푸코, 미셸. 1990. 성의 역사. 이규현 역. 서울: 나남출판.
- Austerberry, H. and S. Watson, 1981. "A Woman's Place: A Feminist Approach to Housing in Britain." *Feminist Review*. 8 (Summer): pp49-62.
- \_\_\_\_\_ 1983. *Women on the Margins: A Study of Single Women's Housing Problems*. London: The City University.
- Brion, M. and A. Tinker. 1980. *Women in Housing: Access and Influence*. London: The Housing Center Trust.
- Bull, J. 1993. *Housing Consequences of Relation Breakdown*. London: HMSO.
- Chan, K. W. 1997.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Inequality in the Housing System: Housing Experience of Women in Hong Kong*.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Ltd.
- Holmans, A. 1990. "Housing demand and need generated by divorce". In *Housing and Divorce*, edited by P. Symon. Glasgow: University of Glasgow
- Gilroy, R. and R. Woods (eds.). 1994. *Housing Women*. London: Routledge.
- McCarthy, P. and B. Simpson. 1990 "Housing issues for divorcing people: perceived problems and the link with child issues." In *Housing and Divorce*, edited by P. Symon. Glasgow: University of Glasgow.
- Moser, C.. 1985. *Housing Policy and Women: Towards a Gender Aware Approach*. Working Paper No. 5, London: University College of London.
- O'Callaghan, B. and L. Dominian. 1996. *Study of Homeless Applicants*. London: HMSO.
- Saunders, P. 1990. *A Nation of Home Owners*. London: Unwin Hyman.
- Symon, P. 1990. *Housing and Divorce*. Glasgow: University of Glasgow

- Watson, S. 1988. *Accommodating Inequality: Gender and Housing*. Sidney: Allen and Unwin
- \_\_\_\_\_(ed). 1990. *Playing the State*. London: Verso.
- \_\_\_\_ and H. Austerberry. 1986. *Housing and Homelessness: A Feminist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Weisman, L. 1994. *Discrimination by Design: A Feminist Critique of the Man-Made Environment*.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ABSTRACT

### **Divorced Women's Housing Conditions and Welfare in Korea**

**Manjae Kim**

Keywords : deconstruction approach, divorced women, housing characteristics, housing satisfaction, housing welfare,

This paper aims to analyse divorced women's housing problems by using *200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2001 Social Statistics Survey*. Results show that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housing situations of married and divorced women. Divorced women are more likely to be living in large cities; to be living in the rented sector; to be living in houses rather than apartments; to lack modern housing facilities; to move frequently; and to be dissatisfied with their hous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Considering that divorce rates are increasing rapidly and more divorced women tend to live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than before thanks to the revised Family Law, it is required to pay a special attention to single mother's housing problems. Based on feminist approaches to the housing studie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housing welfare services. While the 'add on' approach implies to build more public housing and provide more housing loans, environmental determinism stresses the importance of day care center. By contrast, the deconstruction approach claims to reveal power inequality and unfairness in the housing system.